

거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6년 12월 7일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7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7년 7월 11일(제1차 총무위원회)
- 마. 의안번호 : 제2006 - 74호

2. 개정이유

- 고등학교 이하로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현 조례의 지원범위를 대학까지, 또한 우수 교원과 학생에게도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범위를 확대하고
- 사업확대에 따른 교육경비의 기준액을 삭제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에 따른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거창군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지원범위 확대(안 제1조).
 - 현행 초·중·고등학교 ⇒ 초·중·고등학교·대학까지 포함
- 교육보조사업 범위 확대(안 제2조제7항 신설).
 - “우수교원 및 우수 학생유치에 필요한 사업” 신설
-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3%범위를 삭제(안 제3조).
- 보조사업의 신청(안 제4조).
 - 현행 초·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,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보조금을 신청 ⇒ 대학장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

4. 검토보고 요지

-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“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”에 근거하여 초·중·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,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거창전문대학과 한국폴리텍 VII 거창대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교사와 외지 학생유치에 필요한
-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최적의 교육환경과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. 10월 본 조례 제정 이후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학교급식, 원어민 교사 채용, 학교급식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3% 교육경비 기준액을 삭제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준높은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코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1) 제1조(목적)에서 현행 초·중·고등학교 ⇒ 초·중·고등학교·대학까지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내용에 대하여
- 우선 동 조례의 설치근거와 관계된 법령과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으므로

현행조례	개정조례
1)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	1)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
2)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	2)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
	3) 고등교육법 제7조가 관계되고 있음.

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서

- ‘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’고 규정되어 있고

-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(보조사업의 제한)에서
 - ‘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’고 규정되어 있음.
- 고등교육법 제7조에서는
 - 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·보조할 수 있다.’고 규정되어 있음.

※ **쟁점사항(관계법령 저촉여부)**

- (1) 2개의 법률이 조례의 상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판단과
- (2)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
 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지원 대상이 고등학교 이하임을 명시하여 대학의 지원에 대하여는 논란여지가 없으나,
 - 고등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 표기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, 대학교육기관에 지원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다소 있을 수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음.

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해 ‘97.12. 13일 초·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,
교육기본법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교육기본법 제7조(교육재정) ②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 ※ 따로 정한 법률 ⇒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

-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명확한 해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아
 - 관계법에서 제·개정 당시의 개정이유와 규정해 놓은 적용대상에 대한 경위를 살펴봄으로써 최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-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비 보조에 대하여

《최초 신설 : '95. 12. 29, 개정 : 2000. 1. 28》

- 제안이유 : 시군 및 자치구는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- 주요골자 : 시군 및 자치구는 (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)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
- 수석전문위원(尹壽男) 검토보고 : 지금까지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경비보조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이 용이하게 되겠음.
- 교육부 장관(朴燦植) 질의답변 내용 : 현행법으로서는 시·도만이 교육에다 재정지원을 할 수 있지 군이나 구에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- 고등교육법 제7조에서 언급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제3조에서 어떠한 자치단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음.

- 고등교육법 제3조(국·공·사립학교의 구분) 제2조 각호의 학교는 국가가 설립·경영하는 국립학교,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공립학교(설립 주체에 따라 시립학교·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.), 학교법인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.

※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광역이나 기초이냐를 구분할 필요없이 공립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석이 가능하며 또한 천정배 위원과 교육부 장관(이명현)과의 질의답변에서 좀더 명확히 알 수 있음.

- 천정배위원 : 고등교육법은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시·군이나 자치구나 이런 쪽에서 공립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전혀 예정을 얹고 있나요?
- 교육부 장관 :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
- 천정배위원 :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면 이르면 어떤 시,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되지만 안양시라든가 시단위에서는 공립학교를 못 만드나요?
- 교육부 장관 : 예,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.

2) 제3조(보조기준액)에서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3%범위를 삭제함에 대하여는

-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(보조사업의 제한)에 의하면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살펴볼 때, 현재의 거창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됨
- 입법예고에서는 거창교육청으로부터 지원확대에 대하여 유보 의견과 지원기준액에 대하여 3%⇒5~10%로 변경의견이 있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 요지

가. 발의자 : 총무위원회

나. 수정이유

- 지난 제13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였던 2006-74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거창군

관내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현행 초·중·고등학교 ⇒ 초·중·고등학교·대학까지 확대하려는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

-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『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』 과 『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』 에 의하면 시군에서는 대학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
 - 집행부에서는 『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』 은 고등학교 이하 지원근거이고,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지원근거라고 주장함에 따라
 - 관계법령상 해석의 차이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사실이 있었음.
- 그러나 『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』 은 교육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제정된 법률이며, 적용대상 학교를 고등학교 이하라고 결코 볼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설령, 관계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창군의 재정 자립도가 13.5%수준인 열악한 형편에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서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고
- 현실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대학까지 지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상당한 차질우려와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기간 유보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함.

안 제1조(목적) 수정의견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6항 및 「사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거창군 관내 <u>고등학교</u> 이하 <u>각급 학교</u>(이하 “<u>각급학교</u>”라 한다)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과 「사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 및 「<u>고등교육법</u>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각급학교</u>의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원안이 타당함</p>

안 제3조(보조기준액) 수정의견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보조기준액) <u>각급학교</u>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 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<삭 제></p>	<p>제3조(보조기준액) ----- ----- -----15퍼센트 -----.</p>

안 제4조(보조기준액) 수정의견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보조금의 신청) ①<u>각급학교</u>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[별지 제1호서식]의 신청서를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<u>군수</u>에게 제출하고, <u>고등학교</u>장은 <u>군수</u>에게 직접 제출한다.</p>	<p>제4조(보조금의 신청) ①----- ----- ----- -----, <u>고등학교</u> <u>장과 대학</u>장은 -----</p>	<p>원안이 타당함</p>

8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